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등 록 번 호	제 호		
표제부(시설관리권 표시)			
① 표 시 번 호	표 시 란		
	② 설 정 연 월 일		
	③ 시 설 의 명 칭		
	④ 설 정 의 목 적		
	⑤ 시설관리권의 설정 내역		
⑥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뒷면)

① 표시번호	② 표 시 란
③ 비 고	

(앞면)

갑 구 (시설관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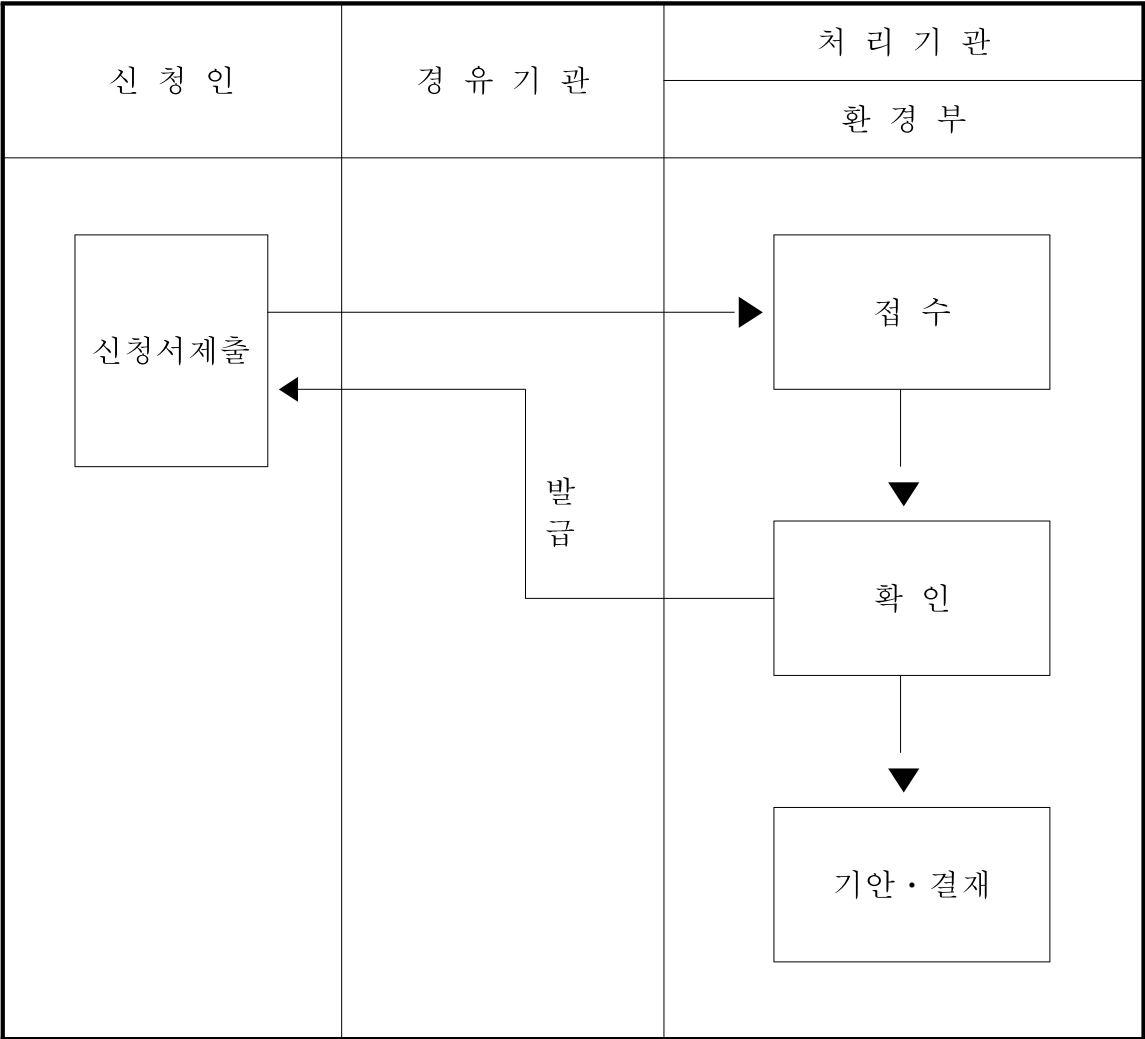
① 순 위 번 호	② 사 항 란
③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뒷면)

을 구 (저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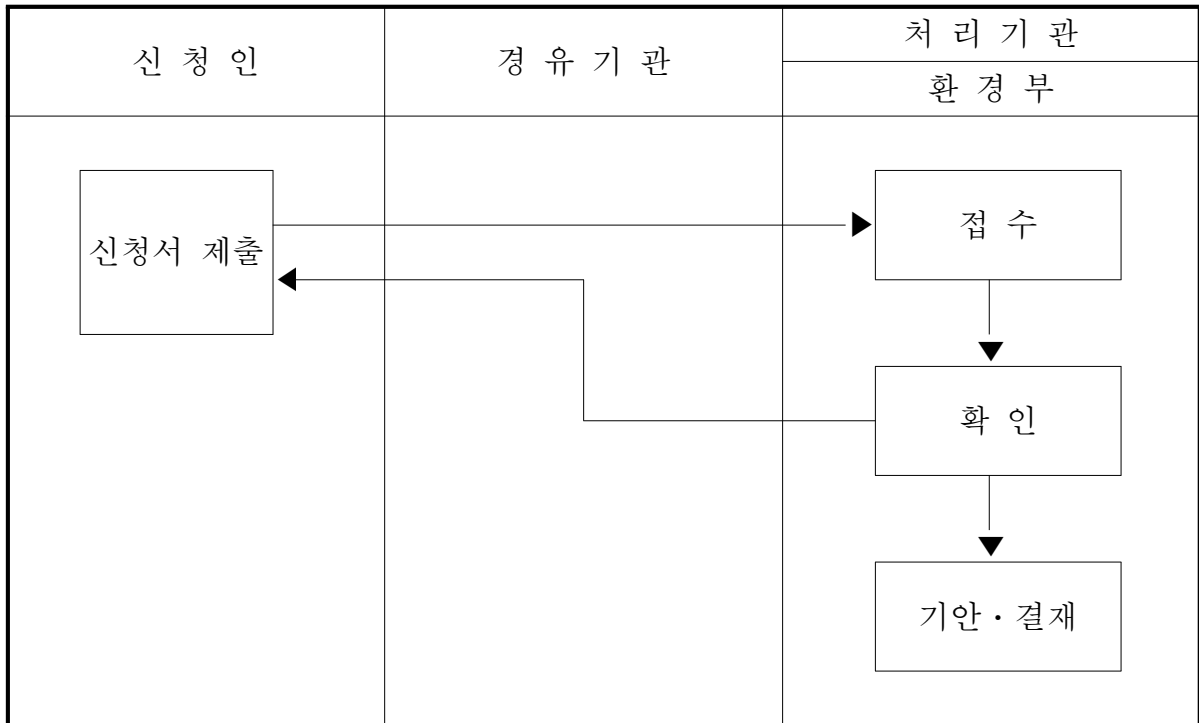
을 구 (저당권)	
① 순 위 번 호	② 사 항 란
③ 비 고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시설관리권의 등록번호		
열 란 목 적		
이 해 관 계		
위와 같이 시설관리권등록부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400원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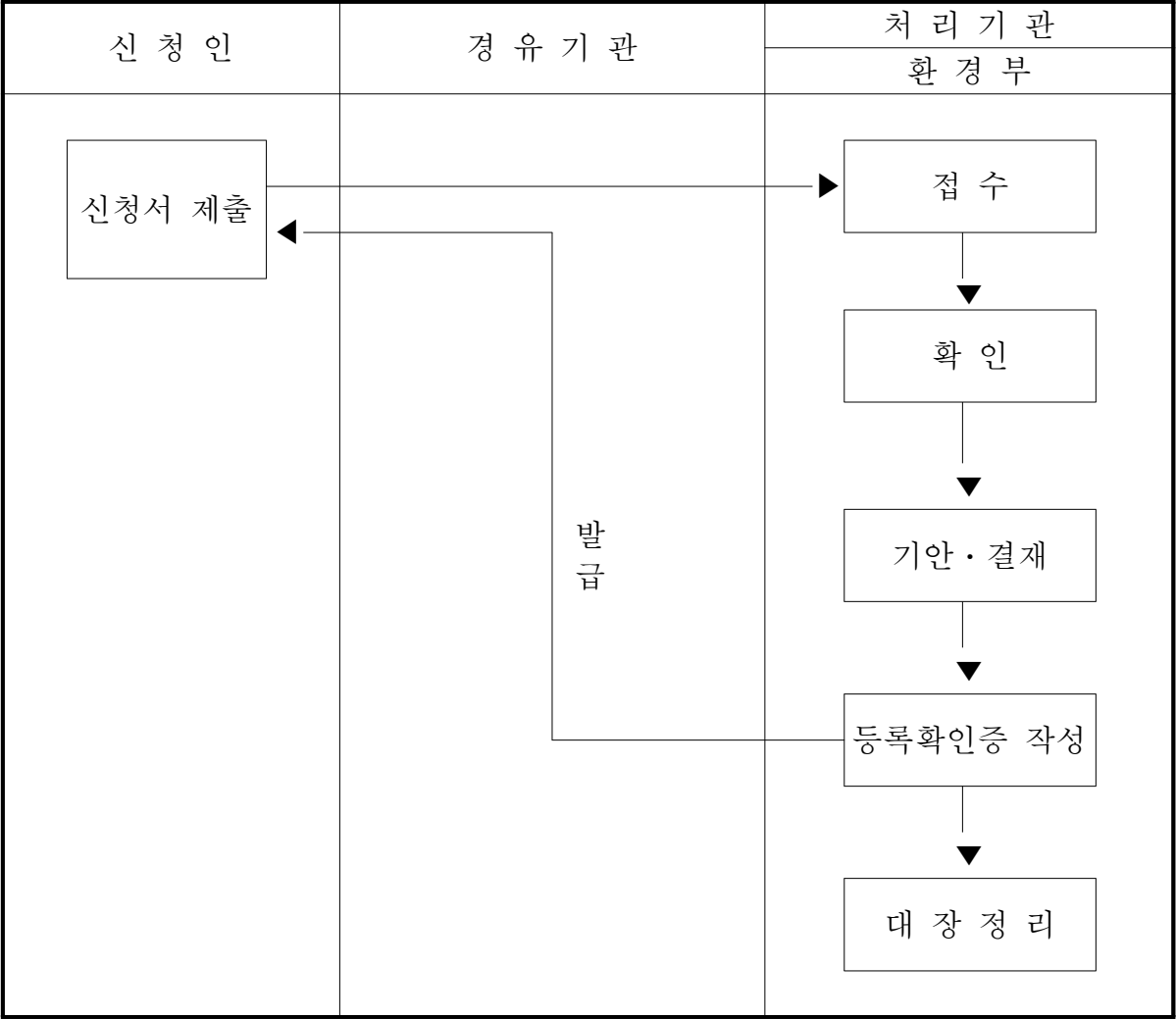
(뒷 면)



수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등록필 통지
	제 호						
시 설 관리권의 표 시	시 설 의 명 칭						
	시 설 의 위 치						
	설 정 목 적						
	시설관리권(저당권) 설정 내역						
등 록 원 인 과 그 연 월 일							
등 록 의 목 적							
특 약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소							수수료
							500원
환경부장관 귀하							

등 록 확 인 증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수도시설관리권 및</u> <u>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u> <u>시행규칙</u>	<u>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u>
제1조(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 서류) ① 「<u>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생략)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이 <u>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처리시설관리권</u>(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 서류) ① 「<u>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u>」-----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인감증명의 제출) ----- --- <u>수도시설관리권</u>----- ----- ----- ----- -----. ----- -----.